

행정 명령 13(2026 년 3 월 24 일)에 따라, 다음은 버지니아주 법에 따른 선거 관련 범죄 및 처벌에 관한 정보입니다.

- 6 급에 해당하는 중범죄:**
- 동일한 선거에서 고의적으로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경우 (추가 투표가 버지니아주 또는 다른 주나 미국령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) § 24.2-1004(B)(i).
 - 동일한 선거에서 다른 사람이 두 번 이상 투표하도록 고의로 권장, 지원, 유도하는 행위(추가 투표가 버지니아주 또는 다른 주나 미국령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). § 24.2-1004(B)(ii).
 - 본인이 투표할 자격이 되지 않는 투표장소나, 자격이 되지 않는 때에 고의적으로 투표하는 경우. § 24.2-1004(B)(iii).
 - 다른 사람이 투표할 자격이 되지 않는 투표장소나, 투표 시기에 다른 사람이 고의적으로 투표하도록 권장, 지원 유도하는 행위. § 24.2-1004(B)(iv).
 - 버지니아주 또는 다른 주나 미국령의 지역에서 추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,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거주지 주소에서 의도적으로 투표 등록을 하는 경우(등록시 이전 등록 정보를 제공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). § 24.2-1004(C)(i).
 - 버지니아주 또는 다른 주나 미국령의 지역에서 추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,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거주지 주소에서 의도적으로 투표 등록을 권장, 지원 또는 유도하는 경우 (등록시 이전 등록 정보를 제공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). § 24.2-1004(C)(ii).
- 5 급에 해당하는 중범죄:**
- 선거관리원 또는 직원이 선거를 관리하는 행위(뇌물 수수, 위협, 협박, 또는 강압 포함)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막는 행위나 또는 이를 시도하는 행위. § 24.2-1000.
 - 법률에 따라 공식적인 사용을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권자 등록 신청자의 소셜시큐리티번호의 일부를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. § 24.2-1002.1.
 - 다음을 훔치거나 고의로, 허위로 또는 부당하게 변경하거나, 또는 다른 사람이 훔치거나 고의로, 허위로 또는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돕거나 방조하거나 허용하는 경우.
 - 등록이나 선거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되는 투표용지 용기, 투표나 등록 장비, 기록 또는 문서의 일부. § 24.2-1009(i).
 - 투표 장비를 준비하고 가동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나 또는 선거 결과를 수집하고 배포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. § 24.2-1009(ii).
 - 전자 투표 장비를 준비, 가동 또는 백업하는 데 사용되는 유형의 전자 활성화 장치 또는 전자 데이터 저장 매체. § 24.2-1009(iii).
 - 고의로, 허위로 또는 불법적으로 선거 결과의 전자적 전송이나 인터넷에서 결과 게시를 가로채거나, 변경 또는 방해하거나,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돕거나, 방조하거나, 허용하는 행위. § 24.2-1009(iv).
 - 등록 또는 선거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사용되는 투표용지 용기, 투표나 등록 장비, 기록 또는 문서의 어떠한 부분을 허위로 기입, 삭제 또는 변경을 하거나,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돕거나, 방조하거나, 허용하는 행위. § 24.2-1009(v).
 - 버지니아 주법 타이틀 24.2 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진술서나, 양식 또는 보고서에 고의로 허위의 중요한 진술이나 항목을 작성하거나 기재하는 경우. § 24.2-1016.
- 1 급에 해당하는 경범죄:**
- 부당하게 투표하거나 부당하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행위. § 24.2-1004(A).
 -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강요하거나(또는 그러한 시도를 하거나) 투표를 방해하거나 막는 행위. § 24.2-1005.
 - 투표용지에 인쇄된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투표용지를 제공하고, 그 사람을 속여 그 사람의 의사와 반대로 투표하게 유도할 목적으로 투표용지 내용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. § 24.2-1005.2.
 - 본인 또는 타인이 유권자 등록 여부 결정에 대한 대가로 금전이나 그 밖의 가치 있는 것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. § 24.2-1007. *
 - 선거에서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. § 24.2-1007.
- 다음의 경우, 피해를 입은 유권자 1 명당 최대 1,000 달러의 민사상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**
- 자격을 갖춘 유권자의 투표를 허용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(재판을 기다리며 구금된 유권자 또는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유권자 포함). § 24.2-1005.2.
 - 투표 자격이 있는 유권자의 표를 고의로 집계하거나 계산하거나 보고하지 않는 행위 또는 이를 거부하는 행위. § 24.2-1005.2.

*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적격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§ 24.2-1007 을 참조하십시오ELECT E013 REV 07/2026ELECT E013 개정일 2026 년 7 월